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안) 심사보고서

1996. 9. 10.
시민보사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년 8월 19일 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1996년 8월 20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6년 9월 10일 제4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 가.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중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항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신설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변경된 법률의 명칭과 법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폐기물관리법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개정(안 제1조)
 - 법 제35조 제1항을 제34조 제1항으로 변경(안 제1조)

3. 專 門 委 員 的 檢 討 報 告 要 旨 (專門委員 : 유 재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1991년 3월 이전에 폐기물관리법 제35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항에 의거 제정하여 지금까지 업무에 사용해 왔으나 19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내용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법이 바뀌게 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에 대한 내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만 우리구 조례가 법이 바뀌고 신설된지 5년이 경과하여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법개정이 되면 즉시 조례 개정을 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審 査 結 果 : 原 案 可 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5
----------	----

제출년월일 : 1996. 8. 1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중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항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신설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변경된 법률의 명칭과 법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폐기물관리법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개정(안 제1조)
- 법 제35조 제1항을 제34조 제1항으로 변경(안 제1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법률 제4354호, '91. 3. 8 제정)
- 나. 합의사항 : 없음
-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 라. 개 정 안 : 별첨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의 규정</u>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목적)<u>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u>에 의하여.....</p>
<p>제2조(이하생략).....</p>	<p>제2조(이하 현행과 같음).....</p>